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그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A사의 퇴직근로자들은 A사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제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만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효 요건인 집단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항소심에서 (i) 임금피크제에 따라 A사 소속 직원들의 정년이 연장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ii) A사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의를 받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설령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i) A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ii) 그에 대한 집단적 동의 절차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관련구성원

기영석
변호사

02-316-4021
ysgi@shinkim.com

김종수
변호사

02-316-1678
jsokim@shinkim.com

이세리
변호사

02-316-4034

조찬영
변호사

02-316-4109

srlee@shinkim.com

cyocho@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